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 가. 발 의 자 : 박성연 의원 외 22명
- 나. 의안번호 : 제 742 호
- 다. 발의일자 : 2023. 5. 23.
- 라. 회부일자 : 2023. 6. 5.

2. 제안이유

- 풍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우선적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침수방지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나. 예산조치 : 원안(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풍수해로부터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침수 방지시설 지원을 위한 비용을 확대하는 한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조,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무) (생 략) <신 설> <신 설>	제3조(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비용 지원) ① ----- ----- ----- <u>전부 또는 일부</u> -----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현황

- 서울시(이하 “시”)는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1)(이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2)에 근거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시비50:구비50) 침수취약지역 주택 등에 물막이판, 옥내역지변(역류방지 밸브), 수중펌프(양수기), 집수정(물저장고)과 같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최근 5년간 침수취약지역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현황

(‘23. 5. 8. 기준)

연도	가구수	사업비 (백만원)	시설 구분			
			물막이판(개)	옥내역지변(개)	수중펌프(대)	집수정(개소)
합계	57,874	79,807	113,343	144,808	518	92
2023	25,075	32,427	55,012	69,120	50	-
2022	12,030	18,242	23,521	24,106	274	14
2021	7,052	10,280	12,150	18,408	34	3
2020	6,849	9,898	12,315	17,202	51	28
2019	6,868	8,960	10,345	15,972	109	47

※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는 자치구 예산 포함

- 1) 「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2)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용도)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 나. ~ 마. (생략)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표] 침수취약지역 침수 방지시설 설치 전·후 사진

시설	설치 전	설치 후	기능 및 역할
물막이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노면수 유입을 막을 때 사용 · 지하주택,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 침수 방지위해 사용 · 탈부착 가능
옥내역지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류방지기능: 물은 흐르게 하고 바닥에서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 · 하수 악취 방지 · 구형 배수구(바닥, 싱크대)를 교체 · 각종 벌레 유입 차단
수중펌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및 상가로 들어온 빗물을 밖으로 배출 · 집중호우 및 태풍 예보 시 동주민센터 구청에서 대여 가능 · 펌프 몸체가 물속에 잠긴 상태로 사용
집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에 따른 빗물 저장 역할 · 집수정 내 만관 시 빗물, 하수 강제 토출 · 집수정내 수중펌프 무상설치사업이나 유지·관리 의무는 건물 소유주 책임

■ 주요골자별 의견

가. 시장 및 시민에 대한 책무 부여 관련(안 제3조제2항, 제3조 제3항)

-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서울시 수방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일부 침수가 발생할 경우 침수 방지시설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

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짐.

- 안 제3조제3항 역시 제2항 신설과 같은 취지로 시민에게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 건축물에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28조³⁾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를 살펴보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⁴⁾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6항⁵⁾는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한 건물·시설 등에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행정안전부가 '23. 1. 5일 시로 통보⁶⁾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서 시민의 책무를 아래 [표]와 같이 부여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3)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① ~ ⑤ (생략)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103, 2023. 1. 5.)

[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표준 조례(안)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시민·군민·구민의 책무) 시민·군민·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 제13조 (후략)

나. 침수 방지시설 비용 지원의 확대 관련(안 제7조제1항)

- 안 제7조제1항은 시가 자치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구청장을 통해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규정을 확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최근 국지성 호우의 증가로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택 및 소규모 상가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등 그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필요하다 여겨지는 바, 공감할만하다 할 것이며, 서울시 역시 긍정적인 입장임.

다. 안전취약계층 침수 방지시설 우선 설치지원 관련(안 제7조제2항)

- 안 제7조제2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정의한 안전취약계층⁷⁾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⁸⁾에서 안전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1조²⁾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즉,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개선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한 지

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2. (후략)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²⁾(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 ④ (후략)

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 유사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적극 공감할만하다 하겠음.